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73
----------	------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22일 이정훈 의원(찬성자 14명)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23일
3.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정훈 의원)

1. 제안이유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설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조례가 없는 상황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은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참조한 「서울

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여 현재 서울시의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선정의 명확한 기준 수립(안 제2조 제2항)
-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
-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42조(보조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안의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법에 위임된 자치사무로써 시장의 방침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2 세부사항별 검토

가. 지원대상 등(안 제3조)

- 조례안은 지원대상으로서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②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고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임.

<표> 법인 설치·운영 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한 시설

(단위 : 개소, %, 천원)

실국	담당과	시설(그룹)	전체 시설 (단위: 개소)	법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법인운영 시설 (단위: 개소)	법인운영 시설비율 (단위:%)	2016년 시 보조금(단위: 천원)
총계						
	소계		1,888	843	44.7	176,397,819
복지 본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98	17	17.4	11,951,772
	어르신복지과	복지관 등 4개 유형	1,089	308	28.3	25,855,52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5개 유형	539	398	73.8	48,254,17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등 2개 유형	86	60	69.8	74,534,742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등 8개 유형	76	60	78.9	15,801,6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등	113	64	56.6
여성 가족 정책실	소계		204	165	81%	92,962,363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폭력보호시설 등 7개 유형	69	60	87%	21,419,779
		아동생활시설 등 4개 유형	135	105	78%	71,542,584

-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한 시설과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서울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를 경우 복지본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대상 시설인 자활지원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등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됨.

〈표〉 복지본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별 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천원)

구분	운영주체				
	개인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민간 단체 등)
		시립	구립		
2016년	8,500,116	77,077,162	76,986,671	165,256,846	11,140,973

- 보조금 제외 대상 규정은 법 제42조(보조금 등)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상위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나. 보조금 지원 관련 (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보조금 지원)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비 등 운영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시장의 방침이 아닌 조례로써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민주적 정당성 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다. 실태조사 관련 (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집행 실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시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장·단기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의견

- 집행부의 정책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며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제적 방식으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법에 근거한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보조금 사업을 시장의 방침이 아닌 법령 형태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조항(제3조제2항)은 법인 위탁 시설과 국고보조 대상 시설에 대한 탄력성 있는 보조금 사업과 ‘법 우선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3
----------	------------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제정안 중 안 제3조제2항은 서울시 보조금 대상 제외 규정인 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대한 저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2. 주요수정내용

- 서울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대상 제외 규정인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 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관리·운영이 위탁된 시설 및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서울특별시 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 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 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 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p> <p>〈삭제〉</p>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